

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공고

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할 사무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.

1. 채용예정 인원

유형	인원	업무내용	근무장소
사무직 직원	0명	연구 과제 및 회계 관리 업무	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

※ 추후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
2. 지원자격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

3. 전형방법

- 전형은 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

4. 전형일정

단 위 업 무	일 정		비고
	부 터	까 지	
지원서류 접수	2016. 12. 15.(목)	2016. 12. 22.(목)	방문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-	2016. 12. 23.(금)	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
면접시험	-	2016. 12. 27.(화)	산학협력단 지정장소
최종합격자 발표	-	2016. 12. 28.(수)	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

※ 전형일정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※ 서류전형 합격자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함

5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산학협력단 소정 양식)
- 이력서(사진첨부) 1부(산학협력단 소정 양식)
 - ※ 이력서의 “경력사항, 자격사항”란을 명기할 시에는 경력(재직)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, 미첨부시 기재사항을 인정하지 않음
- 자기소개서 1부(산학협력단 소정 양식)
- 최종학력 증명서 1부
- 경력기술서 1부(산학협력단 소정 양식, 해당자에 한함)
- 경력(재직) 증명서(해당자) 1부
 - ※ 이력서 상에 기재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반드시 담당업무기재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(산학협력단 소정 양식)
- 지원서상의 각종 증명서류[고유식별정보(주민번호 뒷자리) 삭제 후 제출]

6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6. 12. 15.(목) 09:00 ~ 2016. 12. 22.(목) 18:00까지
- 접수방법
 - 접수 방법 : 직접 방문 제출(근무 시간 내 : 09:00~18:00)
 - ※ 점심시간(12:00 ~ 13:00)은 접수하지 않음
 - ※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
 - 접수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3층 316호
연구지원부 채용담당자(042-821-8962)
 - 2016. 12. 22.(목) 18:00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

7. 처우 및 보수

- 급여수준
 - 연봉 21,922천원 내외(제세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)
 - 가족수당, 선택적복리후생비, 성과급 별도
 - 연장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
- 주 5일 근무
- 계약기간 :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
 - 계약만료 전 평가 및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하며, 2년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정규 전환 가능
- 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정에 따름

8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무효(취소)로 함
- 지원자 중 채용자격요건에 부합해도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기타 전형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름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(전화 042-821-896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12. .

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【별첨1】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채용 결격사유

<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 규칙>

제5조(채용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채용 시 제출서류(경력, 학력, 이력, 기타 각종증명서 등)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
2.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
3.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
4. 피 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 특정후견인
5. 병역 기피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8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0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11.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